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취급 차별화 방안 검토 - ‘방식주의’의 도입을 중심으로 -

김 현 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법학박사

[목 차]

- | | |
|------------------|----------------------|
| I. 서론 | IV. 차별적 취급의 전제로서 방식주 |
| II. 인공지능 창작의 특성 | 의 도입 검토 |
| III. 차별적 취급의 당위성 | V. 결론 |

I. 서론

2018년 현재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인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의학(수술하는 로봇), 법조(인공지능 변호사·판사), 언론(로봇 저널리즘), 제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회자되고 있다. 영역별 특성에 따라 일정부분 오류도 드러나지만, 인간의 역할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러나 창작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기능은 인간이 수행한 결과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공지능을 통해 양산되는 시, 음악, 극본, 그림 등 다양한 유형의 창작물이 시현, 감상되고 있다. 2016년 8월 10일 경기필하모닉은 ‘모차르트 VS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에밀리 하웰(Emily Howell)¹⁾이라 불리는

■ 투고일자 : 2018.5.8. 심사종료일자 : 2018.5.24. 게재확정일자 : 2018.5.30.

인공지능이 작곡한 오케스트라 곡을 공연하였다. 에밀리 하웰이 작곡한 곡은 아이튠즈, 아마존 등에서 유통되고 있고 2010년 ‘프롬 다크니스, 라이트’, 2012년 ‘브레스리스’(breathless) 등으로 정식 발매되었다.²⁾ 또한 구글의 인공지능 엔진은 뉴럴 네트워크의 기능을 활용하여 수많은 로맨스 소설들을 읽고, 그 소설들로부터 배운 단어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소설을 작성하였다.³⁾

현행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귀속된다.⁴⁾ 즉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 창작 과정을 주도하고, 인공지능을 저작물 생성에 필요한 단순한 ‘도구’로만 이용하였다면, 창작을 주도한 그 사람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현행법의 해석상 특별히 이견이 없다. 또한 현행법상 사람의 개입이 없거나 적어도 그 개입이 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이르지 못하고 인공지능 스스로 그림, 음악, 어문과 같은 저작물을 만들어 낼 경우 인공지능 자체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다.⁵⁾ 다만 인

1) 텔레그래프는 Emily Howell이라는 클래식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소개한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음악 교수인 David Cope에 의해 만들어졌고, 단순히 기존의 음악을 모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의 스타일대로 창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http://www.telegraph.co.uk/culture/music/music-news/6404737/Emily-Howell-the-computer-program-that-composes-classical-music.html>, 2018년 4월 23일 확인.

2) 아시아경제, “경기필하모닉, AI 작곡가 곡으로 공연…알고리즘 작곡가 김택수도 참여”, 2016. 7. 31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73115331132658>), 2018년 4월 19일 확인

3) 버즈피드, “Google Is Feeding Romance Novels To Its Artificial Intelligence Engine To Make Its Products More Conversational”, 2016. 5. 4, (https://www.buzzfeed.com/alexkantowitz/googles-artificial-intelligence-engine-reads-romance-novels?utm_term=.mbEAnp8Gv#.cgwNwA1D7) 2018년 4월 23일 확인)

4) 업무상저작물, 영상제작자의 권리 등 예외적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

5)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 AI 창작물에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확인하는 견해는 없는 듯하다. 다만 향후 입법적 과제로서 AI 창작물에 저작권 또는 그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김현경(2017), 저작권 귀속법리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29권 제1호, 331-374면, ‘이해원(2017). 테크노 크레아투라(Techno Creatura) 시대의 저작권법. 저스티스제158-1호, 132-159’,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2017), 83-110, ‘김윤명,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

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를 할 것인지 여부, 보호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창작의 특성과 저작권 제도의 본질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창작물과 인간창작물이 그 법적 취급에 있어서 왜 차별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 취급을 위한 전제로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과 인간에 의한 창작물을 식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인공지능 창작의 특성

1. 인간창작과 구분 곤란

현 단계에서 인공지능 창작이 완전히 인간 창작의 경지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의 ‘호시 신이치’ 문학상 공모전에 출품되고 예선을 통과해서 주목되었던 단편 ‘컴퓨터가 소설을 쓴 날’⁶⁾의 경우 문법 법칙이나 패턴을 제공하고자 처음에 주어진 내용에 따라서 그 이후의 내용을 짜맞추는 방식으로, 결국 인간이 제공한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패턴을 생성하는 시스템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분석하여 렘브란트풍의 그림을 그린 사례⁷⁾나, 소니에서 비틀즈의 음악을 분석하여 비틀즈풍의 음악 연주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사례⁸⁾ 역시 관점에 따라서는 인간

한 시론적 고찰”, 정보법학 제20권 제2호(2016)’ 등을 통해 이미 연구된 바 있다.

6) “소설 쓰는 알파고는 없었다.”, 한겨레, 2016년 6월 26일.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49770.html 2018.4.19. 확인)

7) “Computer paints ‘new Rembrandt’ after old works analysis”, Chris Baraniuk, BBC 뉴스, 2016년 4월 6일.

8) “Sony develops algorithm based AI music”, Michaela Cabrera, 로이터, 2016년 10월 18일

의 창작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해석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유출하여 제시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근래에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시트콤 ‘프렌즈’시리즈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지만, 이는 단지 기존의 패턴을 분석하고 유사한 패턴을 생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들어진 대본 내용은 등장인물인 찰들러에게 알 수 없는 대사를 말하게 하거나 모니카가 몇 번이나 절규하는 등 황설수설이었다고 한다.⁹⁾ 그밖에 ‘임과서블 썩스(Impossible Things)’라는 제목의 영화는 공포 영화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배경과 대사의 줄거리를 생성하고, 인간이 제대로 된 대본을 완성하였으나 그 결과는 공포 영화의 혼란 장면을 모아놓은 정도에 불과했다¹⁰⁾는 평가를 받았다. ‘벤자민(Benjamin)’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이 여러 대본을 분석하여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영화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영화 ‘선스프링(Sunspring)’과 ‘게임이 아니다(It’s No Game)’는 한때 유명 배우였던 데이비드 핫셀호프가 출연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만,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다. 우선, 대본 자체에 이상한 부분이 많아서 배우들이 연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며, 스토리는 엉성했다고 한다. 결국 ‘게임이 아니다’는 인간(?)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긴 했으나, 역시 의미 없는 대사나 행동, 지문을 남발하여 혼란을 일으켰다고 한다.¹¹⁾

그러나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인간 창작물과 구분하기 힘든 창작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구글의 인공지능 딥드림(Deep Dream)이 만들어내는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인 이미지는¹²⁾ 실질적으로 인간 창작물과 구분하기 힘들다. 2016년 3월, 딥드림이 만든 29점의 이미지가 약 1억 3,000

9) “인공지능이 올해 해낸 창작활동들”, 이석원 기자, 테크홀릭 2016년 12월 20일

10) 다만,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이라는 점이 호평을 받아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여 2018년에 공개할 예정이다.

11) “AI의 創作を過大評価する人間。人工知能はアートの主体か、単なる計算機か(AI의 창작을 과대평가하는 인간. 인공지능은 예술의 주체인가, 단순한 계산기인가)”, abcxyz, Fuze <https://www.fuze.dj/2017/05/ai-scenario-benjamin.html> 2018.4.24. 확인.

12) <https://en.wikipedia.org/wiki/DeepDream> (2018. 4. 17 확인).

만 원에 팔린 것 역시 인간 창작물과 거의 유사하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¹³⁾ 소니(Sony) 역시 유튜브를 통해 인공지능 플로우머신즈(Flow machines)가 작곡한 팝송 2곡을 공개하면서 플로우머신즈가 작곡한 음악을 음반으로 제작, 판매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¹⁴⁾

인공지능 창작물이 인간창작물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패턴 분석을 넘어 내용 자체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객·시청자·독자 등 수용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창작 인공지능이 패턴 분석 수준을 능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인간창작물과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 오고 있다. 이러한 창작 환경이 저작물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은 그 결과가 인간에게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간에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2. 창작의 양적 팽창

영국의 소설가 Roald Dahl¹⁵⁾이 1948년 출판한 『자동작문기계(The Great Automatic Grammatizator)』¹⁶⁾라는 소설의 내용에 의하면 자동으로 글을 써주는 기계가 작동된 지 1년 만에 영어로 출판된 모든 소설과 이야기들 중 적어도 반 정도가 이러한 기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책이 모든 서적의 반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적어도 인간보다 단기간 내에 더 많은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13) 이승선,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와 각국의 대응”, 관훈저널 통권 제139호(2016), 52면.

14) 지디넷(Zdnet), “이젠 작곡까지…인공지능, 팝송도 만들었다”, 2016. 9. 29.자 기사.

15) 노르웨이계 영국인 소설가, 시인, 시나리오 작가로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등의 인기 작품을 다수 발표했다.

16) ‘자동으로 글을 써 주는 기계’라는 SF소설에나 나올 법한 소재를 바탕으로 돈벌이에 눈이 먼 소설가들 모습을 풍자한 소설로 1948년 처음 출판되었다.

창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¹⁷⁾ 역사상 다작하는 작가로 꼽히는 셰익스피어는 평생 36편의 희곡을 썼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인공지능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책을 자동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다. 이미 1956년 Martin Klein과 Douglas Bolitho라는 두 명의 수학자가 Tat Pan Alley¹⁸⁾ 노래를 작곡하기 위해 Datatron이라는 디지털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했다. Klein 박사는 라디오 전자 잡지(Radio Electronics Magazine)의 1957년 6월호에 "우리는 인간이 한 시간 동안 만들 수 있는 대중음악을 비록 그 질적 수준은 낮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Datatron은 한 시간 동안 4천곡을 썼다고 한다.¹⁹⁾ 그러나 미국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은 Datatron의 여러 작곡 중 하나인 "Push Button Bertha"에 대한 등록을 거부했다. 그 당시 저작권청이 등록을 거부한 이유는 그 누구도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 음악을 등록하려 한 바 없다는 것이었다. 저작권청이 이러한 거절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기초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제공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필연적으로 저자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암묵적 가정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⁰⁾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과거에 비하여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인공지능 창작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그만큼 인공지능 창작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특히, 인간에 비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대량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또한 기술이 발전하면 비용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업적인

17) John F. Weaver, *Robots Are People Too: How Siri, Google Car,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Force Us to Change Our Laws*, Praeger(2014), p.172

18) 양적·질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중 음악 대부분을 출판하고 있는 대중 음악 출판계의 중심지인 뉴욕 지역을 말한다. 또 의미가 조금 바뀌어서 전문가적인 대중 음악 작곡가 그룹도 틴 팬 엘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틴 팬 엘리 [Tin Pan Alley] [파퐁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2002. 1. 28., 삼호뮤직].

19) Martin L. Klein, *Syncopation in Automation*, RADIO-ELECTRONICS, June 1957, at 36.

20) Annemarie Bridy, "The Evolution of Authorship: Work Made by Code", 39 COLUM. J.L. & ARTS 395 (2016) pp.395-396.

차원에서 콘텐츠 생산자들이 인공지능 창작물을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

3. 창작과정의 불투명성

인간 창작물의 경우 음악, 미술, 건축 등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창작과정의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 창작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의 경우 그리는 패턴, 화풍, 활용된 도구 등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여 창작이 이루어지는지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다. 최근 문제된 조영남 대작 사건 역시 창작과정에서 대작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작품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를 입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것도 결국 어느 정도 정형화된 창작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공지능 창작은 딥러닝 기술에 기반 한 빅데이터 분석과정을 거치게 된다. 딥러닝 기술은 기존의 창작물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창작물의 복제와 분석을 통해 새로운 창작이 만들어 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시스템 내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창작과정을 외부에서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이 다른 저작물의 보호받는 표현을 어떻게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입증이 어렵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침해를 의심받는 자의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제작되어야 하고, 침해를 의심받는 저작물과 원 저작물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할 것(substantial similarity)’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은 인간에 의한 저작물 간에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창작과정을 유추하기 어려운 인공지능의 창작에 있어서는 더욱 어려운 수밖에 없다.

Ⅲ. 차별적 취급의 당위성

1. 왜 ‘차별적’이어야 하는가.

(1) 창작을 보호하는 이유

1) 저작권제도의 본질에 기반 한 검토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본래부터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 중세이전에 저작자의 권리는 독자적 권리이기보다는 출판업자들에게 부여된 인쇄독점권, 혹은 왕권/신권에 결부되어 있었다. 결국 근대시민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이러한 저작자의 종속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되돌려 주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작권 귀속의 정당화, 타당성 논의가 비롯되었다.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문제, 그리고 그러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하여는 다양한 이론구성이 가능하다. 전자와 관련하여 ‘낭만주의 작가관’과 ‘미학적 표현주의’가, 후자와 관련하여 ‘자연권론’과 ‘실정권론’이 대표적이다.²¹⁾ 현재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바 인간의 창작물 즉 저작물에 상응하는 보호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우선 ‘낭만주의적 작가관’에 의하면 작가는 예술작품과 작품 전체의 미의 결정적이고 고정적인 중심이며 창조성의 원천으로 간주되며 작품은 작가가 자신의 천재성을 통하여 창조해낸 독창적 표현으로 여겨진다.²²⁾ 작가가 자신의 노동의 성과물인 작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

21) 저작권 보호의 근본적 이유와 정책적 논거로는 창작자에 대한 도덕적으로 정당한 대가의 지급이라는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의 자연권론적 입장과, 일반 수요자, 즉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영미법계 국가의 공리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실정권론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2) Ryan Littrell, “Notes : Toward a Stricter Originality Standard for Copyright Law”, Boston C.

해서는 작가가 생산한 작품이 명백히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도록 경계 지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소유가능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작가의 행위가 모방이 아님을 논증해야 한다.²³⁾ 즉 작가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였던 논거는 ‘작가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독창적인 것이며 작품의 본질은 작가의 독창성이 표현된 형식에 있다’는 것이다.²⁴⁾ ‘낭만주의 작가관’은 창작성이론 및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낳았다.²⁵⁾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작품은 작가의 인격 즉 자신의 천재성을 통하여 창조해낸 독창적 표현이므로 인격을 파악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 자체가 인정될 여지가 희박하다.

다음으로 크로체의 ‘미학적 표현주의(예술표현설)’는 작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표현을 하며, 그 표현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였다.²⁶⁾ 진정한 직관은 곧 표현이며, 표현은 직관의 분리할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인식의 과정 중에 직관과 표현은 동시에 나타난다. 이러한 직관적 혹은 표현적 지식이 곧 미적인 것 혹은 예술적인 것이다. 이러한 크로체의 표현주의에 의할 경우 예술(저작물성)의 인정여부는 매우 넓어지

L. Rev. 43, 2001, p. 209.

- 23) Edward Young, “Conjectures on Original Composition : in a Letter to the Authors of Sir Charles Grandison(1759)”, James H. Smith and Edd W. Parks(ed.), *The Great Critics : An Anthology of Literary Criticism*, 3rd(W.W. Norton, 1967) pp. 409-410; 이현석, “저작권, 독창성, 문학” 영미문학연구회, 영미문학연구 제2권, 1997, 107~108면.; Mark Rose, “Authors and Owners : The Invention of Copyright”, Harvard Univ. Press, 1993, pp. 113-120.
- 24) 영국의 에드워드 영(Edward Young), 영의 이론을 수용하여 작가의 소유권을 이론화하였던 독일의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등이 대표적이다. 신동룡, “저작권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미하일 바르친의 대화주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31면.
- 25) 저작권인격권에 대하여는 Neil Netanel, “Copyright Alienability Restrictions and the Enhancement of Author Autonomy ; A Normative Evaluation”, Rutgers L. J. 24, 1993, pp. 375-380.
- 26) 낭만주의의 경우 피히테의 주장을 통해 저작권법 담론에 직접 개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미학적 표현주의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는 저자의 역량으로는 확인된 바 없다. 다만 신동룡 박사가 “저작권법에 있어서 2차적 저작권의 사건설-미학적 표현주의와 신고전파 경제이론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베네데토 크로체(Benedetto Croce, 1866-1952)의 주저인 표현학 및 일반 언어학으로서의 미학(Etheica come scienza dell’espressione e linguistica generale)이 1902년에 출간되었고 최초의 영문판도 1909년에 출판된 점에 비추어 당시 20세기 초에 존재하였던 담론구성체 안에서 크로체적 미학 담론과 저작권법 담론이 상호영향적 관계에 있었다고 추론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게 된다. 다만 크로체는 예술을 인간 정신의 주요한 형식 가운데 하나로써 미학적 측면에서 정신의 구성활동으로 간주하므로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직관’의 요소를 결하게 된다.

노동이론에 기반한 ‘자연권론’에 의하면 저작자는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노력의 결실에 대해 권리를 가지며 그에게 지급되는 대가는 그의 지적 노동(intellectual labor)에 대한 임금이다.²⁷⁾ 따라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익을 확보하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내용의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헤겔(Hegel)은 정신적 창작물은 개성 또는 인격의 자기발현으로서 수단을 넘어선 자기목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헤겔에 있어 노동은 자유로운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자기표현이요 자기실현 과정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수단을 넘어 자기목적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재산도 단순한 욕구충족 수단이라는 성격을 넘어 자유의 실현이라는 보다 형이상학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²⁸⁾ 이처럼 자연권론에 기반 할 때 저작권 부여의 정당화 근거는 ‘노동의 자기목적적 성격’, ‘인격적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결여한 인공지능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

한편 실정권론 또는 유인이론에 의할 경우 저작권은 저작물 생산자인 저작자에게 논리 필연적으로 당연히 생겨나는 일종의 자연권이 아니라, 문화발전의 증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도구로서 주어지는 실정권에 불과하다. 이러한 권리를 부여할 때 비로소 저작자들은 저작물을 생산하고 이를 시장에 내놓을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이를 통하여 저작물이 사회에 유통됨으로써 전체의 공익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배타적인 권리인 저작권이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짐으로써 저작자들로부터 보다 높은 수준의 저작물이 보다 많이 도출되고, 그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문화발달이 가능하게 된다는 논리이다.²⁹⁾ 그러나 인공지능의 창작유인

27) M. Stewart Stephen, "International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2nd ed., Butterworths, 1992, p. 3.

28) 김남두 역, 재산권 사상의 흐름, 도서출판 천지, 1993, 90~133면.

은 인간과 다르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창작물의 양산이므로 엄격히 인공지능에 대한 직접적 ‘창작유인’은 의미가 없다. 다만 창작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프로그래머는 엄격히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창작물과 관련된 직접적 유인요인은 아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에 불과한 자에게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 역시 그 창작인센티브 효과는 미비하다.³⁰⁾

2) 인간 인격의 발현에 대한 보호

결국 창작과 저작권제도의 본질론에 비추어 볼 때 권리부여의 타당성의 요소가 되는 것은 첫째, 작가의 ‘인격적 개성의 발현으로서 독창성’이다. ‘낭만주의적 작가관’에 의할 때 예술작품과 작품 전체의 의미를 결정 짓고 창조하는 원천으로 간주되는 작가의 ‘낭만적 상상력’ 또는 ‘독창적 능력’³¹⁾ 작가의 인격에서 비롯된다. ‘자연권론’에 의할 경우 저작을 ‘자유로운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자기표현이요 자기실현 과정’이라고 함에 비추어 볼 때 독창성은 인격적 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개인은 저작권제도가 설립된 기본 개념이며, 이러한 개인만이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노동으로부터 이익보상을 받을 권리가 부여된 것이다.³²⁾ 저작자의 개성은 그 작품 안에 내장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어도 소재의 배열이나 선택에 저작자의 선택이 반영되어 있다는³³⁾ 언급도 결국 ‘인격적 개성’이 저작자를 결

29) William M. Landes, & Richard A. Posner, “An Economic Analysis of Copyright Law”, 18 J. Legal Stud. 325, 1989, p. 328.

30) Mark Perry and Thomas Margoni, “From Music Tracks to Google Maps : Who Owns Computer-Generated Work?”, 2010 CLSR26.

31) 이선영 엮음, 문예사조사 : 고전주의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민음사, 1997, 124면.

32) Mark Rose, “Authors and Owners : The Invention of Copyright”, Harvard Univ. Press, 1993, p. 2.

33) Jane C. Ginsburg, “Creation and Commercial Value: Copyright Protection of Works of Information”, Columbia Law Review Vol. 90, No. 7 (Nov., 1990), pp. 1865-1867

정하는 저작권 귀속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창성 있는 노동’이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자연권’에 의할 경우 단순히 노동의 집적에 의해 배타적 권리를 경계지을 수 없으나, 독창적 표현형식에 의해 배타적 권리의 경계를 확정지을 수 있다.³⁴⁾ 즉 독창성이 전제되지 않는 단순한 노동에 대하여는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³⁵⁾ 따라서 독창성이 결여된 노동은 저작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셋째, 청중에게 본인의 정신적 효과³⁶⁾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이다.³⁷⁾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감정을 발생시킨다는 범주적 의도 즉 ‘저자라는 정신적 상태(mental state for authorship)’이다. 일반적인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저자라고 의도하지 않는 자를 저작자라고 부르지 않는다.³⁸⁾ 원숭이가 우연히 스마트폰에서 귀여운 "셀카"를 찍을 수도 있고 토스터기가 성모 마리아와 비슷한 모습을 만들어 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숭이 또는 토스터 "저작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의도’ 라는 요소는 그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저작자가 아닌가를 구분함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는 저작권제도를 창안

34) Martha Woodmansee and Peter Jaszi, "The Construction of Authorship: Textual Appropriation in Law and Literature", Duke UP, 1994 pp. 466-471.

35) 노동은 이마위의 땀이론(the sweat of the brow doctrine)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나 이미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 Serv. Co. 판결(499 U.S.340(1991))을 통해 이러한 이론은 저작자 인정에 있어서 주요 요인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36) 저작물은 어떠한 정신적 효과(mental Effects)를 불러일으킨다. 반면에 지식재산권의 또 다른 유형인 특허를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생각, 느낌, 감정 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신적 영향을 미친다. 특허발명품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거나, 약하거나 빠르거나 효율적이거나 쉽게 만들지만 즉 더 빨라진 컴퓨터의 프로세싱이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그러한 발명에 의해 직접적으로 어떠한 감정적 혹은 정신적 상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Christopher M. Newman, "Transformation in Property and Copyright", 56 VILL. L. REV. (2011). p. 292.

37) Christopher Buccafusco, "A Theory of Copyright Authorship", Virginia Law Review (forthcoming 2016) pp. 26-30.

38) David Nimmer, "Copyright in the Dead Sea Scrolls: Authorship and Originality", 38 HOU. L. REV. 1, 13 (2001), p. 204 ("...it would seem that intent is a necessary element of the act of authorship.")

한 본질과 목적에도 부합하다. 즉 ‘창작유인’이라는 것은 저작권 제도의 중요한 본질로 이미 확립되어 왔다. 사람들이 그들의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굳이 그러한 창작물을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창작유인의 기반이 되는 의도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창작유인의 혜택 없이 오직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키게 된다. 이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저작권이 “창작유인”이 없는 창작과 창작자들에게까지 확대되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³⁹⁾ 따라서 저작자로 추정되는 자의 의도는 창작 당시에 평가되어야만 한다.

이처럼 저작권 본질론에 따라 저작자를 판단하는 요소에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 이러한 작가의 인격적 개성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독창적 노동’이라는 것도 인격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인공지능 자체의 인격적 보호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 제도의 인용은 타당하지 않다. 창작유인의 기반이 되는 ‘저자로서의 의지·의도’ 역시 인공지능에게는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 제도의 본질론에 비추어 볼 때 독점배타적 권리부여를 통해 보호되는 인간의 창작물과 그 법적 취급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차별화 되어야 한다.

(2) 자본에 의한 창작의 독점 방지

1) 투자의 보호와 구별

‘저작자’의 지위는 후원의 족쇄에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직업 (profession)이 되었다는⁴⁰⁾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의 과정에 ‘투자’가 들어갈 수 있으나, 저작자를 판단함에 있어 ‘투자’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누가 투자했는지는 저작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조할 만한 요소는 될 수 있으나 결정적 판단요인은 아니다. 혹자는 고용계약

39) Christopher Buccafusco, “A Theory of Copyright Authorship”, Virginia Law Review (forthcoming 2016) pp. 26-30.

40) Andrew Bennet, The Author, Routledge 2005 p. 40.

에 의해 업무상 저작물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각 국가의 관할권 하에 가능함을 근거로 ‘투자’를 저작자 판단요소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는 사용자가 저작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오히려 더 창작자 중심의 입법체계를 취하고 있는 체계 하에서는 고용계약을 통해 저작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⁴¹⁾

또한 저작권은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예술적 존엄성에 대한 문제이다.⁴²⁾ 저작권에 대하여 경제적 고려만이 이루어 질 때, 즉 ‘투자’만이 중요하게 부각될 때 저작권이 지니는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함의를 간과하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본질적 정당화 요소는 ‘투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본질이 변질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창작물을 양산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

2) 자본으로부터 창작자의 보호

비용과 투자를 바탕으로 대량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 창작 시스템은 대기업의 영향력 강화와 독점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개인 창작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도 인공지능과 인간의 창작물을 나누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창작과정에 필수적인 빅데이터/알고리즘의 개발에는 자본이 필요하다. 현재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 창작이 구글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독자적인 창작 인공지능을 구

41) Jane C. Ginsburg, “The Concept of Authorship in Comparative Copyright Law”, 52 DePaul L. Rev. 1063 (2003) pp. 1087,1088.

42) Jane C. Ginsburg, “The Author’s Place in the Future of Copyright”, Forthcoming in Ruth Okediji, ed., Copyright in an Age of Exceptions and Limitations(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p.18-23.

축하고, 창작품을 양산하게 될 터인데, 만약 그러한 창작이 일반적인 저작물로서 권리를 인정받는다면, 대량의 창작물이 양산되면서 자본에 의한 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창작물은 서로 간에 완전한 경쟁 관계에 있는 만큼, 인공지능 창작물이 인간 창작자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상황이 가속될 수 있다. 창작물의 질은 제쳐 두고 양적 측면에서 압도적인 결과물이 나오므로써 특히 개인 창작자들의 삶이 곤궁해질 수 있다.

2. '보호'해야 하는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인간 창작물에 권리를 부여한 것과 동일한 근거로 법적 취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은 앞서 논의되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창작물에 어떠한 보호를 부여할 필요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영역에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인간창작물보다 낮은 정도의 차별적 보호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1) 보호무용론 : Public Domain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할 필요가 없음은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 현행법상의 해석을 근거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제2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므로 칩팬지가 그린 그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석(壽石)이나 관상수는 저작물이 아니다. 또한 ‘사상 또는 감정’이란 표현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가의 사상 또는 감정이 이입되고 그 결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에 나타나 있는 사상 또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다.⁴³⁾ 결국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소재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나 소재로부터 구체적인 표현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어떠한 사상이나 감정이 이입되어 그 결과 표현물에 그 사상 또는 감정이 나타나 있는가 하는 점이다.⁴⁴⁾ 현행법상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서 정신적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저작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의 적용/해석과 입법론적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이며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여부는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이므로 현행법의 해석·적용을 근거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저작권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보호대상자로 거론되는 자들이 권리의 주체가 되기에 적절치 않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권리가 인정된다면 그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자들은 인공지능을 만든 프로그래머, 그러한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공지능 자체, 공동저작자 등이다. 우선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법인격 부여는 심오한 철학적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본질론에 입각하여 볼 때 그 권리의 주체로 타당하지 않다. 자연권론에 의할 경우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부터 재산권이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즉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인격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격적 보호법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실정권론에 의한다 할지라도 창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창작물을 양산해 낸다.⁴⁵⁾ 사실 인간 저작자에게 유용하게 요구되는 경제적 혹은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인한 창작인센티브를 인공지능은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

43) 中山信弘, 著作権法(윤선희 편역), 법문사, 2008, 30-31면.

44) 오승중, 저작권법, 박영사, 2016, 69면.

45) Pamela Samuelson, “Allocating Ownership Right in Computer-Generated Works”, 47U.Pitt.L. Rev. 1985, p. 1199.

을 부여하는 가장 근본적 정당화 요소로서 ‘창작유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상 창작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을 만든 프로그래머는 인공지능이 무엇을 창작할지 알 수가 없다. 프로그래머가 인공지능 자치를 만들어 내는데 노동력을 비롯한 여러 자원들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자가 최종적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⁴⁶⁾ 즉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발견되어 있는 것은 프로그래머의 개성이 표출된 독창성이 아니므로 작품에 대한 인격적·재산적 권리를 프로그래머에게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프로그래머의 의도는 창작물을 양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의도이며 이러한 의도를 해당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창작의도까지 확장할 수 없다. 즉 ‘작품을 통해 청중에게 어떠한 정신적 효과를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프로그래머에게 확인할 수 없다. 한편 프로그래머는 해당 인공지능을 만들기에 있어서 상당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은 타당하다. 그래서 이러한 보상의 일환으로 프로그래머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래머는 이미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에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중보상이 될 수 있다.⁴⁷⁾ 성능이 더 좋은 카메라를 개발한 개발자는 그 카메라를 매매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였을 때 그 카메라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며, 그 카메라를 사용해 찍은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카메라 개발자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를 저작자로 취급하는 것은 기존의 저작자의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지적창작물의 보호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프로그래머로부터 인공지능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가 인공지능

46) Emily Dorotheou, “Reap the benefits and avoid the legal uncertainty : who owns the cre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Law Review* 21(4) 2015. at 85-93.

47) Pamela Samuelson, “Allocating Ownership Right in Computer-Generated Works”, *47U.Pitt.L. Rev.* 1985 p. 1207.

창작물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한 대로 그가 어떠한 작품에 대하여 생각하고 실행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저작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개성이 발현된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인공지능 사용자의 통제권과 자율권의 범위는 버튼을 누르는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경우 창작물에 인공지능 사용자의 ‘개성’이 인격적으로 발현되어졌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개성의 발현으로서의 ‘독창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마땅히 저작인격권이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사용자의 기여도가 지극히 최소한이라 할지라도(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에 불과할지라도) 창작의지를 고려해 볼 때 사용자에게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할 만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⁴⁸⁾ 볼 수도 있다. 그래야 인공지능의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끔 하는 인센티브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인공지능의 사용이 활성화된다. 그 결과 인공지능 자체의 가격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창작물을 만드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무언가 독창성 있는 것을 창작하였기 때문에 부과되는 인센티브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권리는 저작권이 아닌 투자나 노력을 보호하는 법제 즉 부정경쟁방지 등 다른 법체계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사용자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다.⁴⁹⁾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머와 사용자가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각각이 저작자로서의 요건

48) Id at 1204.

49) 이러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같은 권리를 통하여 투자 보호 내지 투자 유인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투자나 노력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적 성격의 제도인지, 저작인접권의 일환인지, 혹은 저작인접권이라면 이를 저작권제도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정경쟁방지법제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에 대한 별도의 논의를 통한 논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 고에서는 저작권의 귀속법리에 한정하여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후일 별도의 연구를 통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을 충족하되,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공동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개성’, ‘독창성’, ‘의도’ 등의 저작자의 개념적 요소에 비추어 볼 때, 또한 본질론에 입각한 ‘창작유인’에 비추어 볼 때 프로그래머와 사용자 모두 저작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저작자 개념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저작권이 아닌 이들의 투자와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실정법상이 권리가 논의될 때 그러한 권리의 공동보유자로서의 지위는 논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인공지능 프로그래머, 하드웨어 소유자, 사용자에게 저작권이 각각 분할되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론 역시 이들에게 저작권 귀속 자체의 타당성이 인정된 뒤의 문제이므로 그러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타당하지 않다. 결국 부정경쟁방지나 그밖에 다른 특수한 유형의 권리인정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정당한 귀속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저작권제도는 인간을 전제하지 않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독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에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즉 법률로써 인공지능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면 이를 이용하는 인류의 권익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다.⁵⁰⁾ 그 이유로 현재에도 권리자와 이용자의 권익 사이에 정치한 균형이 문제되는데, 인공지능의 창작을 보호하게 되면 향후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대립적 구도가 심화되고, 추후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학습하고 진화하여 인간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창작물을 만들어 낸다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창작물을 보호함으로써 인하여 인류의 공익이 저해될 수 있다고 한다.

(2) 보호론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저작물에 대한 보호보다는 낮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안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 범위는 통상적인 ‘실질적 유사성’ 범위가 아니라

50)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97면.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견해,⁵¹⁾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견해,⁵²⁾ 저작권등록을 요구하는 한편 전체 보호기간은 줄여 6년(최초 등록 후 3년 및 갱신 후 3년)의 보호기간으로 단축하자는 견해⁵³⁾ 등이다.

인공지능 창작은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비롯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일정한 가치가 있는 인공지능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⁵⁴⁾ 유럽 일부 국가 역시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 창작에 대한 보호를 시도하고 있는 듯하다.⁵⁵⁾ 즉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나 저작권 제도의 본질론에 근거하기 보다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근거로 한다. 즉 창작을 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나 적극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할 경우 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므로 그 범위를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촉진과 이용의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과 범위(예, 가치가 높은 인공지능 창작물)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 결과 보호기간에 대하여 인간 창작물의 보호기간보다 단축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투자가 저작자에게 권리부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하는 못해도, 저작권법상 투자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 해당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데이터

51)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2016. 12.), 101-106면 참조.

52) 차상욱,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쟁점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법조통권 제 723호, 법조협회(2017. 6.) 222면.

53) 윤선희·이승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활용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 제도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52호, 한국지식재산학회(2017. 4.), 186-189면.

54) 内閣府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報告書, 平成28年(2016) 4月.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6/jisedai_tizai/hokokusho.pdf>

55) 김윤명,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문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현상에 대한 우답(愚答)”, 『경제와 와해: 사회, 산업, 미디어의 새로운 지평』, 한국정보사회학회·한국미디어경영학회 2016년 하계학술대회, 코엑스 컨퍼런스룸, 2016.6.3, 348면.

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이다.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라고 하며 그에게 5년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부여한다.⁵⁶⁾ 엄격히 저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 들이는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이를 추출하여 재이용하는 것이 용이하고, 이러한 행위는 제작자의 투자와 노력이라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산업과 활용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한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하여 저작인접권⁵⁷⁾과 유사한 방법에 의한 보호를 취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체계화와 이와 관련된 상당한 투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는 이러한 투자에 근거해서 권리를 취득하며, 또 이러한 투자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다.⁵⁸⁾

따라서 이러한 투자의 보호법리가 적용될 경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제작에 상당한 투자를 한 자’가 일정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용 약정,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성 기여도 등을 근거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자’,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용자’ 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소유자’ 등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될 수 있다. 한편 이들은 인공지능 창작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책임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56) 저작권법 제93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

57) 저작권제도는 1차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copyright work)을 보호하는 제도이나 문화 및 관련산업 발전의 취지상 저작물은 아니지만 그와 인접한 객체를 보호하는 저작인접권(copyright-related rights)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인접권자로는 가수, 무용수, 성우 등 실연자(performer), 음반의 제작에 투자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음반제작자(phonogram producer), 방송을 공중에 전달하고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는 방송사업자(broadcasting organization) 등이 해당된다. 실연자는 그 예술성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지만,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는 다분히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일종의 재산권을 부여 받는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58) 이일호, 김기홍, “빅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9(4), 2016, 43면.

수 없다. 인공지능 창작물이 보호받는 인간 창작물 즉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그 침해 책임 또한 이들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창작의 보호가 저작권제도의 연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보호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는 배타적 보상청구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양적증가, 창작과정의 비투명성등에 비추어 볼 때 개별적 사용허락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투자에 따른 보상의 전보라면,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 준물권적 배타적 권리보다는 사후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욱 적정,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공지능 창작에 대한 권리는 금전적 보상청구권으로 축소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보상청구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게 될 경우 개별이용허락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집중행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3. 소결

인공지능창작물을 인간창작물과 동일하게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 제도의 본질론적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즉 인간의 창작물, 일명 저작물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저작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인공지능 또는 그 창작물이 생성, 발전되도록 그 투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며 이미 저작인접권 혹은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통해 저작권제도 안에서 다루어져 왔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를 부여한다면 그 보호주체는 ‘해당 인공지능의 창작물 제작에 상당한 투자를 한 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게는 배타적 물권보다는 집중화된 보상청구권 형태의 권리보장이 타당하다.

이처럼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차별적 법적취급이 필요함은 명확

하다. 특정인이 인공지능 창작물을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공표하여 독점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저작권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어 낸 창작물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의 창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경우,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특별히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가 없는 한 그 진위를 밝히는 것은 매우 힘들 일이다. 인간창작물에 대하여만 법적 보호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인공지능창작물이라고 밝히길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작권법에도 허위공표 및 허위 등록을 처벌하고 있으나(제136조 제2항 제2호) 이는 사후적 처벌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을 식별해 내기 위한 제도로 활용하기에는 무리이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허위공표·등록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데, 인공지능 창작물을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거짓 주장하거나 허위 등록하는 경우는 인지 자체가 어렵다. 인간에 의한 대작의 경우 대부분 대작자의 증언을 통해서 해결되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인공지능창작물임을 구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간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을 등록하거나 일정한 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논한다.

IV. 차별적 취급의 전제로서 방식주의 도입 검토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차별적 법적 취급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공지능 창작물과 인간의 창작물의 구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식별제도가 필요하

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 제도는 저작권 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조 2항). 특허·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처럼 등록을 권리 발생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무방식주의는 베른협약에서 채택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였다.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으로 저작권법에 등록 등 일정한 방식을 요구할 경우에는 방식주의가 일부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방식주의는 권리의 발생을 위해 등록, 저작권 표시 또는 납본 등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하에서는 무방식주의가 저작권제도에서 가지는 의미와 한계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인간창작과 구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방식주의 도입에 대하여 검토한다.

1. 무방식주의의 의의

매우 오랜 기간의 저작권의 역사에 있어서 저작권의 집행이나 존속에는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어 왔다. 가장 근대적인 저작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710년 앤여왕법과 1790년 미국 연방저작권법 그리고 1791년과 1793년 프랑스 저작권법(droit d'auteur decrees) 모두 저작권의 발생에 있어서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였다. 즉 저작권을 향유하기 위해서 혹은 소송에서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자 혹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등록하고 저작물을 납본하거나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저작권 표시를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가 쟁점화 된 것은 출판업이 확대된 19세기 초라고 할 수 있으며,⁵⁹⁾ 그 당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출판국에 있어서의 방식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⁶⁰⁾ 각 국민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2국간 조약에 의해서 저작권 보호의 기간이나 조건에 대

59) Harry G. Henn, "The Quest for International Copyright Protection", 39 Cornell L. Q., 1953~1954, p. 43.

60) Stephen P. Ladas,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Vol. 1, New York, Macmillan, 1938, pp. 30~35.

해서 상호주의가 취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2국간 조약의 범위는 제한적이며, 각 조약의 내용도 가지각색 이었다. 특히 당시 해적판의 주된 공급원이었던 미국이 더해지지 않았던 점은 치명적이었다.⁶¹⁾ 저작자는 해외에 있어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 모두에 있어서, 복잡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다자간조약인 베른협약은 이러한 불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했다.⁶²⁾ 1883년 베른 국제저작권법학회(Association Litteraire et artistique internationale, ALAI)회의에서는 저작물이 존재하는 어느 하나의 조약 체결국에 있어서의 방식으로만 따르면 좋다는 완화된 조항을 포함한 드래프트조약이 이루어졌다.⁶³⁾ 본 드래프트조약에 근거하여, 1884년 외교회의에서는 내국민대우조항은 제1출판국(미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자의 국적국)에 있어서의 방식 또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 최종 조약안에 포함되었다.⁶⁴⁾ 이후 최종적으로 1908년의 베를린 개정외교회의에서 ‘본 조약에 근거한 권리의 향유 및 행사에는 어떠한 방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무방식주의를 정하였다.⁶⁵⁾ 동 외교회의에 있어서는 무방식주의의 생각은 내국민대우의 진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1967년 스톡홀름 개정 이전의 내국민대우는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저작권자는 본국에 있어서 요구되는 방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만일 본국이 무방식주의국이 아니면,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는 나라에 있어서 엄격한 방식준수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내국민대우에 의한 저

61) Sam Ricketson,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6-1986”, London, Centre for Commercial Law Studies, 1987, at 30.

62) Id., pp. 42-46.

63) ALAI, Bulletin de l'Association litteraire et artistique internationale, Paris, N. 18, Novembre 1883, pp. 10-19.

64) Numa Droz, President, “Preces-Verbal de la cinquieme Seance de la conference pour la Protection des Droits D'auteur, 17 septembre 1884”, in Actes de la Conference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droits d'auteur reunie a Berne du 8 au 19 Septembre 1884, pp. 39-45.

65) 한편 당시의 조문번호는 제4조 제2항 이었는데 조문의 내용은 현행의 제5조 제2항과 다름이 없다. “Annexes : Actes Conventionnels de 1886 et 1896”, in Bureau Internationale de la l'Union Litteraires et Artistique, Convention de Berne Revisee pour la Protection des Euvres Litteraires et Artistique du 13 Novembre 1908, 1912, pp. 2-3.

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의의는 희석화 될 수 있다. 1967년 스톡홀름 개정 외교회의에서 제정된 제5조 제1항은 무방식주의에 관한 변경은 아니었지만 내국민대우에 관하여 상호주의를 철폐하였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제5조 제1항은 변경이 없다.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는 본국에서 무방식주의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국의 법률을 참조하고 거기서 요구되는 방식을 조사할 필요는 없다.

이처럼 무방식주의는 저작권의 본질에 대한 일종의 철학적 맥락에서도 도입되기 보다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의 원칙을 둘러싼 외교교섭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저작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무상의 논의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⁶⁶⁾

베른협약이 베를린 개정에서 무방식주의를 채택한 이래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입법례가 방식주의를 폐기하였다.⁶⁷⁾ 영국에서는 1911년 방식 요건을 폐지하였으며,⁶⁸⁾ 네덜란드는 1912년,⁶⁹⁾ 프랑스에서는 1925년에⁷⁰⁾ 방식요건을 폐지하였다. 우르과이는 1979년,⁷¹⁾ 콜롬비아는 1982년,⁷²⁾ 스페인은 1987년에⁷³⁾ 방식요건을 폐지하였다. 이후 미국이 1989년에 이르러서야 저작권 보호의 필수요건으로서 등록을 요구하는 규정을 폐지하였다.⁷⁴⁾ 따라서 저작권보호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규정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66) Takeshi Hishinuma(박영길 역), “국제규범으로서 무방식주의가 미치는 범위”, 계간저작권 2007 봄호, 98면.

67) 다만 베른협약에 의하면 자국민에게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무방하나, 방식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하여는 방식주의를 이유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68) Copyright Act(1911), 1 and 2 Geo. V, c.46(UK)

69) Act of 23 September 1912 containing new regulation for copyright, Stb. 1912, 308 (the Netherlands).

70) Act of 19 May 1925, Journal Officiel of 27 May 1925 (France).

71) Law No. 14.910 of 19 July 1979 (Uruguay).

72) Law No. 23 of 28 January 1982 on Copyright (Colombia).

73) Law No. 22/1987 of 11 November 1987 on Intellectual Property, Boletín Oficial del Estado, no. 275, of 17 November 1987 (Spain).

74) Berne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 of 31 October 1988, Pub. L. No. 100-568, 100th Cong., 2nd Sess., 102 Stat. 2853 (US). This act became effective on 1 March 1989.

그러나 영국⁷⁵⁾과 같이 베른협약 가맹 시 등록제도를 모두 폐지한 나라도 있는 반면 일본, 미국이나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무방식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당사자의 임의적 등록에 대하여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고, 등록을 강제하는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 인공지능 창작과 무방식주의의 한계

(1) 기술환경의 변화와 무방식주의에 대한 비판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콘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방식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디지털 시대 이전에 모든 콘텐츠는 물리적 객체에 가두어져 있었으며 복제 및 배포 비용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동시에, 양방향적인, 분산된 형태의 저작물 창작과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생산, 저장, 배포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낮아졌다.⁷⁶⁾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견주어 저작물 권리처리 방식의 개선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법적 명확성 확보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저작권법에 방식요건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⁷⁷⁾

75) 영국은 저작권 등록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인쇄출판회관(Stationers Hall)의 등록이 소송 제기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08년의 베른협약 개정을 국내법화 하면서 1911년 등록제를 전부 폐지하였다. E. J. Macgillivray, "A Treatise upon the Law of Copyright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Dominions of the Crown an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ondon, John Murray, 1902, pp. 46-55.

76) James Gibson, "Once and Future Copyright", Notre Dame Law Review, 81 (2005), 167-243 (pp. 212 et seq.).

77) 방식주의 관련 등록제도의 재도입 요구와 관련해서는 Lawrence Lessig, "The Future of Ideas: The Fate of the Commons in a Connected World", (Vintage, 2001), at 251-252; William M. Landes and Richard A. Posner, "Indefinitely Renewable Copyright", U Chicago Law & Economics, Olin Working Paper No. 154, 2002, at 471-518; François Lévêque & Yann Ménière, "The Economics of Patents and Copyright", Berkeley Electronic Press, 2004, p. 105;

즉 무방식주의에 의한 불명확성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더 간편한 절차가 마련되고 절차의 이행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방식주의의 채택이 오히려 더 이로울 수 있다. 일각에서도 저작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다룰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등록제도를 제안하기도 한다.⁷⁸⁾ 특히 디지털시대 이전 상황에서 등록주의는 저작권자에게 큰 이득이 없이 부담만을 주는 것이었으나, 디지털환경과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그 창작물이 누구의 것인지, 이용하려면 누구와 협의를 하며 누구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법률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한다.⁷⁹⁾ 2005년 제13회 WIPO 저작권등 상설 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이하 SCCR이라 한다.)에서 저작권 및 인접권을 대상으로 하는 ‘비강제적(임의적)등록제도’에 관한 각 국내법을 조사하였다.⁸⁰⁾ 본 조사는 비강제적등록제도가 권리침해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식에서 비롯되었고, 동 조사에 의하면 일부 베른협약 가맹국은 등록제도가 권리자에게 간단하고 효과적인 권리증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공익적 관점에서 볼 때 등록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접근이나 이용이 용이하게 될 수 있으며, 통계작성이나 문화·역사적 유산의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다.⁸¹⁾

Christopher Sprigman, “Reforming Copyright”, *Stanford Law Review*, 57, 2004, pp. 485-568; Cecil C. Kuhne III, “The steadily shrinking public domain : Inefficiencies of existing copyright law in the modern technology age”, *Loyola Law Review*, 50, 2004, pp. 549-563; Kevin A. Goldman, “Limited times : Rethinking the bounds of copyright protec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54, 2006, pp. 705-740; Pamela Samuelson, “Preliminary Thoughts on Copyright Reform”, *Utah Law Review* no. 3, 2007, pp. 551-571 등 참조

78) 윤종수, “저작물의 공유와 과제 Ver.0.9”, *계간저작권* 2006 여름호, 2006, 86면.

79) Lawrence Lessig, “The Future of Ideas: The Fate of the Commons in a Connected World”, (Vintage, 2001), p. 288.

80)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독일, 헝가리, 인도, 일본, 멕시코, 필리핀, 스페인, 미국 등 총12개국이 설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였다.

81) WIPO, *Survey of National Legislation on Voluntary Registration Systems for Copyright and*

(2)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무방식주의의 한계

무방식주의의 주요 논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 저작물은 개인 인격의 발현이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즉각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⁸²⁾ 이처럼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생성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저작권의 보호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주의와는 양립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논거는 방식주의가 저작권의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와 충돌한다는 것이다.⁸³⁾ 이러한 주장은 저작권을 자연권으로 보는 견해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여 진다. 저작권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인데 방식주의로 인해 그 권리가 제한된다면 자연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저작물 자체가 추상적이고 뚜렷한 외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을 주장한다. 방식주의는 저작물의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일정한 외형을 갖추고 있을 것과 연계되거나 저작물의 창작성과 주관성은 이러한 방식주의에 의해 쉽게 표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저작물은 그 저작물을 구현하고 있는 물리적 객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의 사상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나 방식주의는 이러한 추상적 저작물의 속성에 적용되기 곤란하다고 한다.⁸⁴⁾ 네 번째 근거는 국제적 보호를 이유로 제시한다. 방식주의는 국가 간의 저작물 보호에 있어서 안정적인 국제적 보호를 저해한다는 것이다.⁸⁵⁾

그러나 앞서 검토한 대로 무방식주의가 베른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범규범이 된 이유는 저작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됨으로

Related Rights, SCCR/13/1, 2005, pp. 2~4;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대한 검토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각국에 존재하는 저작권 등록제도를 조사할 뿐이다.

82) Otto Gierke, *Deutsches Privatrecht*, 3 vol., Duncker & Humblot (1895-1917) I, 1895, S. 766 und 787f.

83) Silke von Lewinski, “International Copyright Law and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43.

84) Sherman & Lionel Bently, “The Making of Modern Intellectual Property Law : The British Experience”, 1760-191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183.

85)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2 vol., I, Macmillan, 1938, p. 55.

서 보호의 축소와 창작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니다. 내국민대우 및 상호주의에 의한 국제적 보호의 편의성 측면에서 확립된 범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비단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최근 디지털기술에 의한 정보유통환경의 변화와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의 증대는 권리의 불명확성이라는 무방식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우선 무방식주의의 문제점은 저작물이 언제 창작되었는지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저작물이 완성품으로서 특정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드시 저작자가 저작물로서 최종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가 창작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완성품에 이르는 단계에서 저작자의 사상, 감정이 외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되었을 때 저작물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를 쓰는 경우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의 단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무방식주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권리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공표권은 저작자의 고유한 권리이나 공표의 방식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공중으로서는 누가, 언제 공표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하물며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 방식주의 도입의 논거가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저작물은 개인 인격의 발현이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즉각적으로 발생한다는 논거는 인공지능 창작에 적용될 수 있다. 인격권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논하지 않고는 합당한 논거가 될 수 없다.⁸⁶⁾ 다음으로 저작권을 자연권으로 봄으로서 방식주의가 저작권의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와 충돌한다는 근거는 자연권은 인간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전제로 하므로 이 역시 인공지능 창작물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저작물 자체가 추상적이고 뚜렷한 외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의 창작성과 주관성은 이러한 방식주의에 의해 쉽게 표출될

86) 인공지능에게 인격권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한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논거는 일응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인공지능 창작에 대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이라는 점을 미리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⁸⁷⁾에 대하여 저작권 법제는 특허법이나 상표법 등과 구별되게 등록이나 공시와 본질적으로 친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⁸⁸⁾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저작권 법제의 등록주의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저작물이 무형의 전달방법에 의해 이용될 수 있음을 제기하기도 한다. 즉 저작권의 경우 유형물을 통한 배포행위뿐만 아니라 전시, 공연, 전송 등과 같은 무형(無形)의 표현방법을 통하여서도 그 표현이 지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법이나 상표법에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등록 및 공고가 이루어지도록 저작권법에서 강제하는 경우 가령 타인이 그 공고된 등록내용을 통하여 당해 권리자의 권리내용을 확인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사실상 해당 저작물의 가치를 무형의 방법으로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⁸⁹⁾ 그러나 이는 저작물, 즉 보호받는 표현의 내용·범위를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며,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하기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임을 식별하고자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무형적 방식으로만 유통되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미 식별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전시는 미술/건축/사진저작물을 전제로 하는 바 인공지능을 통해 창작된 미술/건축/사진 등은 전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유체물 형태로 고정되어야 하며 유체물에 인공지능 창작물임을 표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연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이므로 이용대상 창작물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여타 등록제도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본다. 전송 역시 전송하고자 하는 대상물

87) 손승우, 앞의 논문, 102면.

88) 박준석,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우리 지적재산권법 관련 쟁점들의 통합적 분석”, 정보법학 제21권 제3호, 2017. 201면.

89) 박준석, 앞의 논문, 201면.

은 디지털화된 콘텐츠이므로 일정한 디지털식별체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 창작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 자체가 추상적이고 뚜렷한 외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보호받은 창작적 표현은 사후에 소송과정에서 확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창작(저작물)의 내용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 단언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엄격히 이러한 추상성은 저작물뿐만 아니라 특허법상 발명,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등 모든 지식재산에 공통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명과 디자인 등은 추상성을 명세서, 도면 등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그와 동일 또는 유사범위를 보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식주의는 국제적 보호를 저해한다는 것인데, 이는 인공지능창작물에 대하여 인간 저작물과 동일한 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점 등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무방식주의의 정당화 근거로 미약하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무방식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에 의한 저작물 즉 저작물과 구별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정부분 ‘방식주의’의 도입이 더 현실적이다.

3. 인공지능 창작물 식별제도 도입

(1) 식별제도 도입의 의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하건 부여하지 않건 간에 인간 창작물로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법적 취급’이 필요하다. 즉 인간창작물과 구분 짓는 식별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인정된다. 식별제도가 없을 경우 본인이 창작하지 않은 것을 본인의 저작물이라 주장할 수 있는 허위공표죄·허위등록죄 등의 범법행위가 양산될 수 있다.

또한 ‘투자자의 보호’차원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는 경우 권리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용자(또는 이용자)의 가

치 판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창작물의 가치는 창작물의 상업화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것을 수용하고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의해 결정된다. 기업에서 어떤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이용자가 그만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 콘텐츠는 그만큼 판매가 되지 않게 마련이다. 이러한 가치 판단은 이용자 자신의 주관적 기준을 따르게 된다. 대중에게는 인기가 없는 창작물도 누군가에게는 매우 소중한 명작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작물의 출처가 이용자가 창작물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005년 칙팬지가 그린 그림이 경매에서 낙찰된 바 있다. 1954년에 태어난 '콩고'라는 칙팬지가 그린 그 그림은, 일찍이 영국 동물행동학자의 관심을 얻어 현대미술연구소에서 전시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칙팬지가 그린 유화와 데생에 관심을 가졌고, 화가 피카소도 선물 받은 그림을 자신의 스튜디오 근처에 붙여놓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콩고의 그림 3점은 무려 2만 5620달러(약 2,600만원)에 낙찰되었다. 이는 경매 회사가 매겼던 가치(1130~1500달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금액으로, 이 그림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작품자체의 창작성 보다는 '칙팬지의 그림'이라는 희귀성이 작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을 칙팬지가 그린 그림이라고 알지 못하는 경우, 즉 이 그림을 유명작가의 작품으로 오인한 경우 '작가의 개성이 뚜렷한 대단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기까지 했다.⁹⁰⁾

결국 이용자가 창작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창작자가 누구인가'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일례로 조영남씨의 대작 사건이 사기 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것도, '조영남'이라는 유명인이 창작했다고 생각한 창작물이 실은 다른 사람의 대작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창작물을 산 사람들은 그것이 '조영남'이라는 유명인이 만든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으며, 그것이 조영남이 만든 것이 아님이 드러

90) 변종필, “<아트톡톡> 예술과 비예술①-창조적 행위의 기준과 추상화”, 김달진미술연구소 외부칼럼.

나면서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

현재 구글의 인공지능 창작물이 매우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그 희소성 때문일 수도 있으며, 만약 그러한 희소성이 사라진다면 그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창작자가 누구(무엇)인가’라는 것이 창작물의 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창작물 수요자의 경제적 가치 추구 차원에서, 좀 더 객관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창작자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명확히 표시될 필요가 있다.

(2) 인공지능 창작물 식별 의무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적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인지 인간의 창작물인지 식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등록을 의무화한 경우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로 허위 등록하여 보다 강한 보호를 받으려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는 인간 창작물과 구분하기 위해 자동적·의무적 식별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것임을 알려주는 식별자가 인공지능의 창작프로그램을 통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에 내재되도록 의무화하여 인간의 개입에 의한 조작가능성이 최대한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도 함께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공지능 창작물은 창작 당시부터 인간이 인위적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임이 표시되도록 설계(designed by AI copyright)되어야 한다.

콘텐츠에 대한 식별제도는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법제2조제1호). 따라서 디지털화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저작물이 콘텐츠에 해당된다. 제23조에서는 정부가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별체계 연구 개발, 식별체계 표준화,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식별체계 등록, 인증, 평가 및 관리, 식별체계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콘텐츠 식별은 이용자의 오인 또는 혼동을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는 국가표준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에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체계 또는 식별체계 간의 연계표준이다.⁹¹⁾ UCI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콘텐츠에 대한 식별체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유통과정에서의 식별체계로서는 적절하다. 그러나 인공지능 창작물은 온라인상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산되지만 오프라인상에서 그림, 음악 등 실물로서 존재한다. 실물로서 존재하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인간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즉각 인식할 수 있는 식별제도가 함께 고안되어야 한다.

V. 결 론

인공지능 창작은, 기술의 발전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단순한 모방을 넘어 인간의 창작과 유사한 창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간에 비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대량 창작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등록 등 일정한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창작시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만큼, 무한정 많은 작품을 쏟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 창작에 동일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 창작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정당화 요인을 검토하고 그러한 차별적 취급의 전제로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91) 온라인의 모든 콘텐츠에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는 한국형 URN(Uniform Resource Name)식별체계로서 식별체계 구성요소인 구문구조, UCI 메타데이터, 운영절차, 운영시스템의 네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URN은 정보자원을 위치와 관계없이 식별하고 영구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UCI 총괄기구로서 국가표준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http://www.uci.or.kr/kor/file/intro/new_intro_01a.jsp 2018.5.1 확인

방식주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창작의 보호와 저작권제도의 본질론에 비추어 볼 때 독점배타적 권리를 통해 보호되는 인간의 창작물과 인공지능 창작물이 그 법적 취급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권리부여의 타당성의 요소가 되는 것은 ‘인격적 개성의 발현으로서 독창성’, ‘노동’, ‘창작유인을 발동시키는 스스로 저자라는 의도’ 등이나,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 이러한 작가의 인격적 개성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독창적 노동’이라는 것도 인격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AI자체의 인격적 보호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창작자를 전제로 한 저작권 제도의 인용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창작 유인의 기반이 되는 ‘저자로서의 의지·의도’ 역시 인공지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인공지능 창작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저작자 보호법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투자의 보호 측면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제작에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양적증가, 창작과정의 비투명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 허락을 기반으로 하는 배타적인 권리보다는 집중관리를 통한 사후 보상청구권 형태가 더 유용할 수 있다.

셋째,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창작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식별 제도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로 허위 공표·등록하여 보다 강한 보호를 받으려는 유인이 큰 만큼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는 인간 창작물과 구분하기 위한 자동적·강제적 식별제도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I. 단행본

- 김남두 역, 재산권 사상의 흐름, 도서출판 천지, 1993.
오승중, 저작권법, 박영사, 2016.
장인숙, 저작권법원론, 보진재출판사, 1989.
B. Croce, Aesthetic as Science of Expression and General Linguistics
Cambridge, 1992(이해완 옮김), 크로체의 미학, 예전사, 1994

II. 논문

- 강손근, “예술모방설에 대한 반성”, 철학세계 제4집, 부산대학교 철학연
구회, 1993.
권용수, “日 지식재산전략본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검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16.
김민호·김현경,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설정 기본원칙에 대한 고찰”, 성균
관법학 第28卷 第3號, 2016.09.
김용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보호가능성, 법학연구27권 3호, 2016.
김윤명,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정보법학 제
20권 제2호, 2016.
김현경, “저작권 귀속법리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29권 제1호, 2017.
김현돈, “예술모방설과 예술표현설에 관한 비교연구”, 인문학 연구 제3집.
김종철, 낭만주의, 이선영 엮음, 문예사조사 : 고전주의에서 포스트모더
니즘까지, 민음사, 1997.
박준석,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우리 지적재산권법 관련 쟁점들의 통합
적 분석”, 정보법학 제21권 제3호, 2017.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한국

- 정보법학회, 2017.
- 신동룡, “저작권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미하일 바르친의 대화주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 신동룡, “자유주의적 저작권담론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고찰”, 법철학연구 제8권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5.
- 윤선희·이승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활용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52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4.
- 윤중수, “저작물의 공유와 과제 Ver.0.9”, 계간저작권 2006 여름호, 2006
- 이현석, “저작권, 독창성, 문학” 영미문학연구회, 영미문학연구 제2권, 1997.
- 이해원, “테크노 크레아투라(Techno Creatura) 시대의 저작권법”. 저스티스 제158-1호, 2017.
- 장유미, “일본: 정부,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를 검토”, <저작권 동향>, 2016년 제4호.
- 차상욱,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쟁점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법조통권 제723호, 법조협회, 2017. 6.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일본]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 보고서』, National IP Policy (2016-21), 2016. 11.

III. 외국문헌

- Alfred C. Yen, “The Interdisciplinary future of Copyright Theory”, 10 *Cardozo Arts & Ent. L. J.* 423, 1992.
- Alfred C. Yen, “Restoring the Natural Law : Copyright as Labor and Possession”, *Ohio St.L.J.* 51, 1990.
- Andrew Bennet, *The Author*, Routledge 2005.
- Andrew J. Wu, *From Video Games to Artificial Intelligence : Assigning Copyright Ownership to Works Generated by Increasingly Sophisticated Computer Programs*, 25 *AIPLA Q.J.*131, 1997.
- Annemarie Bridy, *The Evolution of Authorship: Work Made by Code*, 39

- COLUM. J.L & ARTS 395, 2016.
- Anniina Huttunen and Anna Ronkainen, Translation Technology and Copyright, *Nordic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2012
- Bruce W. Bugbee, *Genesis of American Patent and Copyright Law*, Public Affairs Press, 1967.
- Christopher Buccafusco, A Theory of Copyright Authorship, *Virginia Law Review* (forthcoming 2016)
- Christopher M. Newman, Transformation in Property and Copyright, 56 *VILL. L. REV.* 2011.
- David Nimmer, Copyright in the Dead Sea Scrolls: Authorship and Originality, 38 *HOUS. L. REV.* 1, 13, 2001.
- Dan L. Burk, Method and Madness in Copyright Law, *Utah Law Review*, Vol 2007, No 3.
- Emily Dorotheou, Reap the benefits and avoid the legal uncertainty : who owns the cre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Law Review* 21(4) 2015.
- Evan H. Farr, ‘Copyrightability of Computer-Generated Works’, 15 *Rusters Computer & Tech. L.J.* 1989.
- Glasser, Copyrights in Computer Generated Works, *Duke L.& Tech Rev.* 0024, 2001.
- Harry Surden, “Machine Learning and Law”, *Washington Law Review*, Vol. 89, No. 1, 2014.
- James Grimmelman, Copyright for Literate Robots, *Iowa Law Review*, Forthcoming ; U of Maryland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2015-16, 2015.
- Jane C. Ginsburg, Creation and Commercial Value: Copyright Protection of Works of Information, *Columbia Law Review* Vol. 90, No. 7 (Nov., 1990).
- Jane C. Ginsburg, The Concept of Authorship in Comparative Copyright Law, 52 *DePaul L. Rev.* 1063, 2003.

- Jane C. Ginsburg, The Author's Place in the Future of Copyright, Forthcoming in Ruth Okediji, ed., *Copyright in an Age of Exceptions and Limitations*(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Justine Hughes, The Philosophy of Intellectual Property, *Georgetown L.J.*77, 1988.
- Lemley Mark A., Roman Authorship and Reticence of Property, *75Tex.L.,Rev.*, 1996.
- Lior Zemer, On the Value of Copyright Theory, August 12, 2006.
- Lior Zemer, The Idea of Public Joint-Authorship in Copyright, *43Osgoode Hall L.J.* 2005.
- Lior Zemer, On the Value of Copyright Theory, *Intellectual Property Quarterly*1, 2006.
- Mark Rose, *Authors and Owners : The Invention of Copyright*, Harvard Univ. Press, 1993.
- M. Stewart Stephen, *International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2nd ed., Butterworths, 1992.
- Neil Netanel, Copyright Alienability Restrictions and the Enhancement of Author Autonomy ; A Normative Evaluation, *Rutgers L. J.* 24, 1993.
- Pamela Samuelson, "Allocating Ownership Right in Computer-Generated Works, *47U.Pitt.L.Rev.* 1985.
- Paul Goldstein, *Copyright*, 2d ed., Little Brown and Company, 1996.
- Perry Mark and Thomas Margoni, From Music Tracks to Google Maps : Who Owns Computer-Generated Works?", *CLSR* 26, 2010.
- Peter Drahos, *A Philosophy of Intellectual Property*, Dartmouth, 1996.
- Peter Jaszi, Toward a Theory of Copyright : The Metamorphoses of 'Authorship', *Duke L.J.* 19, 1991.
- Roberta Rosenthal Kwall, The Author as Steward 'For Limited Times': A Review of The Idea of Authorship in Copyright,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Vol88, 2008.
- Ryan Littrell, Notes : Toward a Stricter Originality Standard for Copyright

Law, Boston C. L. Rev. 43, 2001.

Sam Ricketson, *People or Machine : The Berne Convention and the Changing Concept of Authorship*, 16Colum.-J.L.& Arts, 1991.

T. Metsch *Asthetik als Abbildtheorie*(이춘길 번역), *리얼리즘 미하그이 기 초이론*, 한길사, 1985.

Timothy L. Butler, *Can a Computer Be an Author? Copyright Asp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Dorotheou4 Comm/Ent L.S.* 707 (1981-1982)

Tuomas Sorjamaa, I, *Author-Authorship and Copyright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nken School of Economics(Department of Accounting and Commercial Law), 2016.

William M. Landes, & Richard A. Posner, “An Economic Analysis of Copyright Law”, 18 *J. Legal Stud.* 325, 1989.

William W. Fisher III, “Reconstructing the Fair Use Doctrine”, 101 *Harv. L. Rev.* 1659, 1988.

| 국문초록 |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어 낸 창작물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의 창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 작가의 인격적 개성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독창적 노동’이라는 것도 인격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인공지능 자체의 인격적 보호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 제도의 인용은 타당하지 않다. 창작유인의 기반이 되는 ‘저자로서의 의지·의도’ 역시 인공지능에게는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은 인간의 창작물과 그 법적 취급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차별화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저작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인공지능 또는 그 창작물이 생성, 발전되도록 투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를 부여한다면 그 보호주체는 ‘해당 인공지능의 창작물 제작에 상당한 투자를 한 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저작권자와 같은 독점배타적 물권보다는 보상청구권 형태의 약화된 보호가 타당하다. 한편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경우,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특별히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가 없는 한 그 진위를 밝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창작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식별제도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로 허위 공표·등록하여 보다 강한 보호를 받으려는 유인이 큰 만큼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는 인간 창작물과 구분하기 위한 자동적·강제적 식별제도가 도입되어 한다.

주제어 : 저작권의 본질, 저작자,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물, 무방식주의, 식별제도

Abstract

Study on the differentiation of legal treatm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formalities’

*Hyun-Kyung Kim**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es works on a level that is almost the same as human-created works. However, in the ca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the personality of the author does not appear in the light of the essence of the copyright system. Also, since 'creative labor' comes from author's personality,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the copyright syste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without the protection on person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Willingness and intention as an author', which is the basis of creative incentives, is also not compatibl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fore,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should not be treated the same way as Creatures by humans, but differentiated. There is no need to protect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in terms of whether they should be “protected” in light of the intent of the copyright system. However, it is recogniz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investment to create and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Therefore, if a certain protection is given to artificial intelligent generated

*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h.D. in Law.

works, the subject who enjoys the protection can be a person who invested heavily in the produc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For them, the weakened protection such as monetary claim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exclusive rights such as copyrights. On the other hand, if a person who has control over an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claims to be his or her own creation,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reveal the truth unless there is a system to identify the artificial intelligent generated works. Therefore, in order to differentiate the legal trea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identification system is needed so that users can distinguish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from human creativ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automatic and compulsory identification systems are introduced to distinguish human artworks from them.

Keywords : the Essence of the Copyright System, Author,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Non-formality Principle, System to Identify the Artificial Intelligent Generated Works